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2029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중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2023. 4. 20.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3.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3. 3. 31. 접수 제5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피고의 숙부, D는 피고의 숙모로, C과 D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C, D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C,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당사자명	약정일	보증기간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C	2019. 2. 21.	2019. 3. 5.~2022. 3. 5.	200,000,000원	170,000,000원
D	2019. 9. 23.	2019. 9. 25.~2022. 9. 25.	150,000,000원	127,500,000원

다. 그 후 C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은 2회에 걸쳐 2023. 9. 5.까지 연장되었고,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은 2023. 3. 25.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도 같은 기한으로 각 연장되었다.

라. D는 2023. 3. 31. 피고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504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은 2023.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바. C, D는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3. 6. 30. E은행에 C를 대신하여 합계 172,711,857원을, D를 대신하여 합계 124,199,13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사. D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채무 120,7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C 역시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채무 168,3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2024. 4. 25.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F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D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3. 3. 25. E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점, ③ C은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전인 2023. 4. 13.경부터 대출 원리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④ 이후 원고는 2023. 6. 30. D,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D,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 D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채무초과 상태인 C, D가 각 보유하였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선박,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3. 초순경 D, C이 재산을 정리하고 이주하겠다고 매수를 요청하던 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저수지가 피고의 김 공장 운영에 불가결한 용수 추출을 위하여 필요하고 위 각 부동산이 당초 피고의 선친 소유 부동산이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3. 31.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배우자인 G이 D에게 2023. 3. 31. 3,000만 원, 2023. 4. 3. 2,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 D는 각 피고의 숙부, 숙모로서 친족 관계에 있는 점, 피고가 C, D와 같은 마을(전남 완도군 H)에 거주해 온 점, 피고 스스로도 2023. 3. 초순경 D, C이 재산을 정리하고 이주하겠다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선박을 매수할 것을 요청해왔음을 자인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당시 C, D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C은 2008. 1. 23. 전남 완도군 I 임야 8,686㎡, J 임야 601㎡, K 임야 3,174㎡, L 임야 3,273㎡, M 임야 4,364㎡에 관하여 합유자를 피고, C, N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4. 24. N이 사망함에 따라 위 각 토지를 피고와 합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시점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록 시점과 인접한 2023. 4. 4.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2023. 4. 6.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도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 시점 전후로 C 소유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었고 이를 피고가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는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C과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매매가액을 얼마로 정하였는지, 피고가 C에게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가 제시하는 을 제6,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저수지가 위치해 있고 피고 운영의 김 공장에서 그 저수지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까지 축조되어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손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도연

별지